제1598호
2019. 5. 2.(목)

발 행 인 : 동 작 구 청 장 이 창 우
편 집 인 : 홍보전산과장 김 미 자

전 화 : 820-1458
F A X : 820-9996

선 람	기관의 장

동 작 구 보

차 례

◎ 훈 령
제2019-194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1
제2019-195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수사계길 거리가게 특화거리 운영 규정---------- 3
◎ 공 고
제2019-540호 :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공시송달 공고---------- 14
제2019-542호 :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16
제2019-543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17
제2019-549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2
제2019-552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4
제2019-558호 :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8
◎ 인사발령 ---------- 40

공 람														

1.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구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동 작 구

훈 령

◈ 서울특별시동작구 훈령 제19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동작구청장 이 창 우 인

2019년 5월 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유공납세자 또는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동작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증 또는 모범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선발 공고일로부터 1년간 동작구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제6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동작구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6조제10항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한다.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 ---------- ---------- ----------.
1. ~ 6.(생 략)	1. ~ 6.(현행과 같음)

<신 설>	7. 유공납세자 또는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동작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증 또는 모범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선발 공고일로부터 1년간 동작구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7.(생 략)	8.(현행 제7호와 같음)
제6조(주차요금 감면)	제6조(주차요금 감면)
① ~ ⑨ (생 략)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동작구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 **개정이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에 대해 주차요금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하고자 하며,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이용자를 추가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성공적인 정착과 이용자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공납세자에 대해 선발 공고일로부터 1년간 주차 요금을 면제하는 규정 신설 (안 제4조제7호)

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로 주차요금을 결제한 사람에게 해당 금액의 10%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6조제10항)

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안 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훈령 제19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수사계길 거리가게 특화거리 운영 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수사계길 거리가게 특화거리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동작구청장 이 창 우 ㊞
2019년 5월 2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생과 소통을 통한 거리가게 개선사업으로 보행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수역 12번 출구에서 14번 출구까지 조성된 '이수 사계길 거리가게 특화거리'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가게"란 이수사계길 특화거리(이하 '특화거리'라 한다)에 설치된 노점을 말한다.
2. "운영자"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거리가게를 설치·사용·수익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3. "보조 운영자"란 사전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신고된 1명을 말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한다.
4. "도로"란 「도로법」제10조 중 특별시도(特別市道) 및 구도(區道)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특화거리 거리가게의 운영 및 관리 등은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등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거리가게 운영주체) ① 거리가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자의 단독운영에 따른 신체피로 등 운영공백 해소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보조 운영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 운영자가 배우자가 아닌 경우 운영기간은 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원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쌍방 협의하에 30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거리가게 운영자는 거리가게 소유주로서 거리가게의 안전과 제반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거리가게 운영자 증명서를 거리가게 내부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거리가게 관리) ①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거리가게 시설물 관리 현황을 작성·보관하고 거리가게 실태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사업 및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우 거리가게의 위치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점용허가) ① 거리가게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거리가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갱신허가를 포함)는 1년 단위로 한다. 도로점용허가를 갱신하고자 할 때는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갱신허가 시 2년마다 소득 및 재산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거리가게 운영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가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승계할 수 있으나, 직계 존비속에게는 승계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라 거리가게 운영을 승계 받은 자는 재승계할 수 없다.
⑥ 구청장은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영업자에게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재산조회) ① 운영자 및 배우자의 실제소득의 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조의2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이며, 소유 부동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제2항의 금액을 차감한 자산가액이 3억5천만원 미만인 사람에 한정하여 허가한다.
②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2. 금융기관 융자금 및 사채. 다만, 사채의 경우 공증인증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고 1억원까지만 차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 및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갱신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행위의 금지) ① 운영자는 특화거리 거리가게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

보로 제공하거나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 및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운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특화거리에 최초 설치된 시설물 외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허가취소 되어 철거된 시설물을 대신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③ 운영자는 별표1의 거리가게 운영조건, 별표2의 거리가게 운영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도로점용허가 취소 및 영업중단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취소 및 영업의 중단, 거리가게 철거를 명하여야 한다.
1. 거리가게를 설치한 자가 스스로 포기한 경우
2. 운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다만,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외)
3. 거리가게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경우
4. 길거리음식 판매시설 위생점검 결과 D등급으로 결정된 경우
5. 운영기간 제한 중 운영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중단 또는 운영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위치 조정 등을 거부하는 경우
2. 별표1의 거리가게 운영조건 위반하는 경우
3. 거리가게 운영 관련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체납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관허사업제한 통보가 있는 경우
4. 별표2의 거리가게 운영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7일 이내의 시정명령과 별표3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① 구청장은 해당 지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도로(도로 부속물을 포함한다) 설치, 보수 공사 등
2.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 향상 등을 위한 거리가게 개선사업의 추진
3. 인접지역에 현저한 손실을 입힐 경우
4. 주변 환경 변화(도시계획사업 추진) 등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도로점용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원인이 해소된 경우 구청장은 당해 지역에서 도로점용을 재허가 할 수 있다.
③ 거리가게 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거리가게 판매대 철거 등) ① 거리가게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거리가게 판매대를 즉시 철거하고 도로점용 면적을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되어 갱신허가가 되지 않은 경우
2. 제7조에 따라 도로점용 갱신허가가 제한 된 경우
3.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거리가게 판매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도로법」 제74조의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규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철거한다.

제12조(점용료 등의 산정 및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거리가게 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에 따라 산정하고 제4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거리가게에서 도로점용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③ 점용료·과태료, 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른다.

제13조(수수료의 징수)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거리가게 운영조건

1. 운영자는 거리가게 운영과 관련된 법령 및 조례,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권 확보 등 이용시민의 편익과 공익 도모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운영자는 거리가게 운영과 관련하여 거리가게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거리가게가 파손 및 훼손되었을 경우 운영자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는 운영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동작구청장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영업자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작구청장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운영자는 거리가게 운영 기간 중 도로를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운영자는 동작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구조를 임의 변경 또는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받은 공간외의 장소에 물건을 적치, 진열하지 아니한다.

<별표2>

거리가게 운영자 준수사항

1. 운영자와 보조 운영자 이외의 자에게 시설물의 운영을 대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거리가게 외부에 포스터나 현수막 등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천막·비닐 등의 시설을 임의로 설치할 수 없고 기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거리가게 운영자는 15일 이상 폐점할 수 없다.

4. 거리가게에 운영자 증명서를 항상 비치하고 관계공무원 확인시 제시하여야 하며, 운영상태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5. 전기안전검사 및 가스안전검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6. 거리가게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7. 거리가게 주변과 외관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8. 법령으로 취급이 금지되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한 품목은 판매할 수 없다.

9. 부정·불량식품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취급식품은 변질되거나 오물 또는 다른 물질에 따라 오염되지 않게 하여야 하고, 영업종료 후 모든 음식물은 냉장 보관하고, 식재료는 사전에 청결하게 세척하는 등 소비자가 섭취하기에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1. 식품을 취급할 경우에는 맨손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고, 종이, 집게, 숟가락, 일회용 장갑 등의 위생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영업자는 위생모자, 위생복을 단정히 착용하고 머리, 손톱 등 용모를 항상 깨끗이 하여야 한다.

12. 「식품위생법」에 따라 질병 등으로 음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 음식 판매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

13. 쓰레기는 뚜껑이 있는 그릇에 담거나 밀봉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쓰레기와 폐식용유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3>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도로점용허가 기간 내 같은 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도로점용허가 기간 내 같은 위반행위로 4회 적발되면 허가취소 처분을 한다.
3. 도로점용허가 기간 내 위반사항과 관계없이 위반 횟수가 총 5회를 초과하거나, 제한 중 영업하는 행위는 허가 취소 처분을 한다.
4.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가. 각각의 처분 기준 중 허가 취소가 있는 경우 : 허가취소 처분을 한다.
 나. 각각의 처분 기준이 모두 제한인 경우 :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에 나머지 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5. 어떤 위반행위든 그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Ⅱ. 개별기준

조항	위반내용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제9조제1항	거리가게 운영 포기	시정명령	영업중단 철거		
	운영자의 사망 (배우자 승계 경우 제외)				
	제3자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 제공				
	길거리음식 판매시설 위생점검 D등급				
	운영기간 제한 중 운영				
제9조제2항	시설물의 위치 조정 거부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중단 철거	
	별표1 거리가게 운영조건 위반				
	관허사업 제한 통보	시정명령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5일	영업중단 철거
	별표2 거리가게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				

〔별지 제1호서식〕

거리가게 보조 운영자 신청서

운영자	① 성 명		② 관리번호		
보조 운영자	③ 성 명		④ 생년월일		
	⑤ 주 소		⑥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⑦ 운영자와의 관 계					
⑧ 보조운영자 신청사유					

이수사계길 거리가게 특화거리 공동영업자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수사계길 거리가게 특화거리 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1. 보조 운영자 신분증 각 1부.
2. 보조 운영자 가족관계증명원 1부.

〔별지 제2호서식〕

거리가게 운영자 증명서

- 관리번호 :
- 운영기간 : . . . ~ . . .
- 장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앞)
- 취급품목 :
- 운 영 자 :

천 연 색 사 진 (가로3㎝×세로4㎝)	천 연 색 사 진 (가로3㎝×세로4㎝)
(성 명)	(성 명)

위 사람은「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수사계길 거리가게 특화거리 운영 규정」에 따라 거리가게 운영자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동 작 구 청 장

유 의 사 항

1. 운영자는 반드시 이 증명서를 시설물 내에 잘 보이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는 시설물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2. 거리가게의 사용 권리·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임의로 장소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3. 승인 없이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구조물 외관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임의의 장소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4. 운영자는「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수사계길 거리가게 특화거리 운영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안 됩니다.
5. 그 밖에 「도로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거리가게 시설물 관리 현황

운 영 자 사 진	보조 운영자 사 진

허가번호		영업위치		관리번호	
형 태			취급품목		
운영자	성 명	(남, 여)	연 락 처		
	생년월일		주 소 (거주지)		
	가족사항		-		
도 로 점용료	년도	부 과 액	납부일자	비 고	
현 황 사 진					

(뒷면)

거리가게 단속 및 조치사항 기록부

단속 일시	위 반 내 용	조 치 사 항		확인자	(인)
		위반횟수	행정처분내용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수사계길 거리가게 특화거리 운영 규정

□ 제정이유

거리가게의 제도권 편입에 따른 적정 관리 및 거리가게 운영방법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도로점용허가 및 재산조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거리가게 특화거리의 운영 목적·용어 정의(안 제1조～제3조)

나. 거리가게 운영원칙 및 운영주체 규정(안 제4조～제5조)

다. 도로점용허가 및 재산조회(안 제6조～제7조)

라. 행위금지 및 도로점용허가취소, 영업중단(안 제8조～제9조)

마. 사정변경에 의한 허가의 취소 및 판매대 철거 등(안 제10조～제11조)

바. 점용료 등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안 제12조～제13조)

사. 거리가게 운영조건, 운영자 준수사항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별표 1 ～ 별표 3)

공 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540호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공시송달 공고

관내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건축과-8454(2019.4.18.)호로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5월 2일

동 작 구 청 장

【공시송달 내용】

1. 공고대상

연번	대지위치	소유자	위반내용	부과금액
1	사당동 2*2-3*	김*시	• 지층노출(0.4m), • 사전입주 • 옥탑위반(옥탑용도변경 시공) : 9㎡ • 주차장위반(주거용시공으로 주차불가) • 면적증가(지층~2층:4.36㎡, 3층:10.06㎡) • 이격거리위반(담장일부 인접경계 침범) • 면적 증가 : 23.14㎡	1,536,000원
2	흑석동 6*	유*식	• 일조높이제한위반(북측처마돌출로일조권저촉) • 지층노출(지층미성토) • 주차장위반(지하주차장미확보) • 옥탑위반(옥탑면적증가약4.8㎡)	265,440원
3	사당동 2*2-1*	한*경	• 3층 18.13㎡ 증축	83,390원
4	상도동 5*4-2*	이*임	• 4층 81.75㎡ 증축	5,312,420원
5	신대방동 6*8-1*7	심*안	• 대수선 지붕변경 66.12㎡	132,240원
6	대방동 4*1-2*	김*훈	• 대수선 지붕변경 20㎡	17,870원

2. 공고기간 : 2019. 5. 2. ~ 2019. 5. 16. (15일간)

3. 의견제출기한(부서명) : 2019. 5. 16.까지(동작구청 건축과)

4. 처분제목 :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5.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6. 처분내용 :

상기 공고대상자가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지시하오니 공고기한 내 시정하시고 그 결과(시정 전·후 사진 등)를 우리 구(참조: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한 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시정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징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구 건축과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구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작구청 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542호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 하고 공시합니다.

2019년 5월 2일

동 작 구 청 장

1.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결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9년 1월 1일

나. 개별주택 수(단독, 다가구, 다중) : 14,351호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면적, 가격
(내용 생략, 동작구청 부과과, 동 주민센터, 동작구 홈페이지 열람)

라. 열람 장소
- 동작구청 부과과 및 동 주민센터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동작구 홈페이지(www.dongjak.go.kr)

2. 이의신청 방법

2019.1.1.기준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2019년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동작구청 부과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서울시 및 동작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3. 시행일

이 공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54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동 작 구 청 장

1. 제정이유

보라매 쓰레기 집하장(관악클린센터 포함) 인근 주민 및 보라매공원 이용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및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목적 및 설치(안 제1조 ~ 제2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나. 기금의 조성 및 용도(안 제3조 ~ 제5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반회계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관련 경비 및 운용·관리비 등의 용도에 사용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

다. 기금의 운용·관리(안 제6조 ~ 제8조)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은 회계연도마다 작성, 동작구의회에 제출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9조 ~ 제15조)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임명

-기획예산과장·재무과장·청소행정과장 및 구의원, 청소 및 환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위촉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규정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수당 등 지급 가능

마. 관계 규정의 준용(안 제16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운용·집행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의 규정에 따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전화:02-820-9140, FAX: 02-820-9979, E-mail: hjeong200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폐기물관리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건축비(건립부지 매입비 포함) 및 부대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 운용·관리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예산 및 결산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업무 담당 팀장

② 「지방회계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청소행정과장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청소 등 폐기물처리와 관련 있는 업체·기관의 임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환경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
2.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

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자문·연구·감정·감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의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6조(관계 규정의 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다.

②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54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동 작 구 청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개정으로 인한 수강료 감면대상자를 추가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복지법 시행 2019.7.1.)에 따른 관련 용어를 변경하여 평생학습관 수강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2> 평생학습관 수강료 감면 기준 개정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는 수강료 50% 감면

(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자는 수강료 10% 감면

(3) '1~3급 장애인' 을 '심한 장애인'으로, '4~6급 장애인' 을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용어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교육정책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3층 (대방동, 유한양행빌딩)]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정책과(전화 : 820-1764, FAX : 820-1658, E-mail : yoojuhye@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1급～3급 장애인”을 “심한 장애인”으로, “4급～6급 장애인”을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하고, 평생학습관 수강료 50% 감면 대상에“4)「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신설하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을 “5)”로 하고, 10% 감면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대 상	비 고
10% 감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 적용 유효기간) 별표2의 10% 감면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 2>

구분	대 상
면제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소년·소녀가장 포함)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3급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감면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급 ～6급 장애인 2) 만 65세 이상 어르신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신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개 정 안

<별표 2>

구분	대 상
면제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소년·소녀가장 포함)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감면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만 65세 이상 어르신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4)「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대상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0% 감면	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55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2일

동 작 구 청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변경 및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조항을 반영하여 조례내용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안 제4조)

1)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 12. 31.”에서 “2024. 12. 31.” 로 하고 단서로써 존속기한 연장 규정 명시

나. 인용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안 제1조, 안 제2조의2제4항, 안 제8조제1항제3호, 안 제15조제2항)

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로 변경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4)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하고,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시 성별 균형 조항 반영(안 제5조의2제2항)

1) “구성한다.”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 생활경제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74, 9층 생활경제과(대방동, 유한양행빌딩)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생활경제과(전화 : 02-820-1180, FAX : 02-820-4083, E-mail : sjson@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로 한다.

제2조의2제4항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의2제2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하고,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
제2조의2(정의) ①·②·③ (생 략) ④“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2조의2(정의) ①·②·③ (현행과 같음) ④----------**「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기금의 용도 및 존속기한) ①·② (생 략)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및 존속기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2024년 12월 31일**----.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

	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생 략)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복지환경국장, 수탁금융기관의장, 구의원 및 중소기업 관계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5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 ----------.
제8조(융자의대상) ①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1.·2. (생 략) 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4.·5. (생 략) ② (생 략)	제8조(융자의대상) ① ---------- ---------- ---------- ----------. 1.·2. (현행과 같음) 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생 략) ②**「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생 략)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회계법」**-- **재무관**---------- ---------- ----------. ③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558호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법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동 작 구 청 장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개정 2018.12.31. 시행 2019.7.1.)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개정 (안 제2조)

다.「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3조)

라.「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4조)

마.「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참조 : 사회복지과,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장애인지원팀(전화 : 820-9308, FAX : 820-9989, E-mail : etzzang@dongjak.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주요 개정 사항인 장애등급제 폐지 사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아래의 용어를 변경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정비함으로써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등급'→'장애정도', '1~6급'→'등록장애인', '등급외'→ 장애미해당
'1~3급'→'심한 장애', '4~6급'→'심하지 않은 장애'

제2조(「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애유형, 장애등급"을 "장애유형, 장애정도"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장애등급자"를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단서 중 위임장("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가")를 위임장("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으로 한다. 또한 제7조 단서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을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별표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서식 신청 구분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할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조(지원범위) ① ---------- ----------_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수수료 및 사용료 면제감면) ① 생략 1 ~ 2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자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2 ~ 6 (생 략)	제21조(수수료 및 사용료 면제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② ---------- ---------- 1.「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2 ~ 6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신청)매점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생략 2. 위임장(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가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 3 ~ 4 생략	제5조(신청) ---------- ---------- 1. 현행과 같음 2. 위임장(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 3 ~ 4 현행과 같음

제7조(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리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대리인은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로 한다.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					
순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와 그가족및유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생략	생략	생략	생략
2	장애등급이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생략	생략	생략	생략
3	장애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제7조(사업의 의무)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					
순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와 그가족및유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생략	생략	생략	생략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생략	생략	생략	생략
3	삭제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

순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및유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65세 이상 노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65세 이상 노인으로 미과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중 미과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중 1순위 이외의 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신청서

1.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주 소	(전화번호:)				
장애명		장애등급			
수급유형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조기구 유형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서비스 요청 내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의뢰서

장애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신청서

1.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주 소	(전화번호:				
장애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조기구 유형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서비스 요청 내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작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의뢰서

장애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장애명		장애등급	급
수 급 유 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보조기구 유형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의뢰 내역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비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업 체 명 :

성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등 급		수리의뢰서 발 급 일	
보조기구 종류		고장 내용		수 리 일	

연번	수 리 내 역	수급자격 (수급자, 차상위, 일반)	수리비	신청 금액
1				
2				
3				
합 계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사진(수리내용 건수별 반드시 사진 첨부)

수 리 전	수 리 후

장애명		장애정도	
수 급 유 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보조기구 유형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의뢰 내역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비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업 체 명 :

성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장애정도		수리의뢰서 발 급 일	
보조기구 종류		고장 내용		수 리 일	

연번	수 리 내 역	수급자격 (수급자, 차상위, 일반)	수리비	신청 금액
1				
2				
3				
합 계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사진(수리내용 건수별 반드시 사진 첨부)

수 리 전	수 리 후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신청서

1.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장 애 명		장 애 정 도			
수급유형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조기구 유 형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서비스 요청 내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의뢰서

장애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장애명			장애정도		
수 급 유 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보조기구 유형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의뢰 내역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비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내역서

업 체 명 :

성 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장애정도		수리의뢰서 발 급 일	
보조기구 종 류		고장 내용		수 리 일	

연번	수 리 내 역	수급자격 (수급자, 차상위, 일반)	수리비	신청금액
1				
2				
3				
합 계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사진(수리내용 건수별 반드시 사진 첨부)

수 리 전	수 리 후

관 계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언어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장애 정도의 심사 대상 등)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받아 장애 정도가 정해진 사람. 다만,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신청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6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장애 상태의 변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 장애 정도를 심사하지 아니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 대상자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하여 심사 대상자의 장애 정도가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 정도 심사의 세부적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인사발령

[발령 제87호]

연번	성명	발령사항	현직	
			부서	직급
1	**이 효 정**	복직을 명함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전예고)	주택과	지방행정서기보

2019. 4. 29 字

[발령 제88호]

연번	성 명	발령사항	현 직	
			부 서	직 급
1	**임 재 신**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행정지원과	지방행정주사보
2	**김 명 진**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부동산정보과	지방행정주사보
3	**송 재 홍**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가로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4	**왕 미 경**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흑석동	지방행정주사보
5	**문 준 희**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사당제1동	지방행정주사보
6	**김 현 주**	지방세무주사에 임함	징수과	지방세무주사보
7	**이 민 영**	지방세무주사에 임함	부과과	지방세무주사보
8	**이 태 현**	지방세무주사에 임함	부과과	지방세무주사보
9	**이 수 비**	지방사회복지주사에 임함	복지정책과	지방사회복지주사보
10	**류 시 열**	지방보건주사에 임함	보건의약과	지방보건주사보
11	**이 원 근**	지방시설주사(토목)에 임함	도시전략사업과	지방시설주사보 (토목)
12	**김 국 철**	지방운전주사에 임함	청소행정과	지방운전주사보
13	**이 영 희**	지방사무운영주사(전산)에 임함	노량진제2동	지방사무운영주사보 (전산)

연번	성 명	발령사항	현 직	
			부 서	직 급
14	**박서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안전재난담당관** 근무를 명함	여성가족부	행정주사보
15	**안현득**	동작구 전입을 명함 건설교통국 **도로관리과** 근무를 명함	수원시	지방시설서기(토목)
16	**오은선**	고양시 전출을 명함	안전재난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17	**임종훈**	수원시 전출을 명함	도로관리과	지방시설서기(토목)
18	**이주영**	복직을 명함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근무를 명함	교육정책과	지방행정주사보
19	**정지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함 (2019년5월1일부터 2020년4월30일까지)	체육문화과	지방행정주사보
20	**김주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해제를 명함	민원여권과	지방행정주사보
21	**양민경**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해제를 명함	민원여권과	지방행정주사보
22	**최윤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해제를 명함	사당제5동	지방행정주사보

2019. 5. 1. 字

[발령 제89호]

연번	성 명	발령사항	현 직	
			부 서	직 급
1	**정원영**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홍보전산과	지방행정서기보시보

2019. 5. 4. 字

[발령 제90호]

연번	성 명	발령사항	현 직	
			부 서	직 급
1	**양유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함 (2019년5월11일부터 2019년6월30일까지)	보육여성과	지방사회복지서기

2019. 5. 11. 字.

[발령 제91호]

가. 의원면직

연번	성 명	발 령 사 항	현 직	
			부 서	직 급
1	송만호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보건기획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금 연 단 속)

2019. 5. 1.字.

[발령 제92호]

연번	성 명	발령사항	현 직	
			부서	직급
1	**심영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함 (2019년5월2일부터 2020년5월1일까지)	건 축 과	지방시설주사보 (건 축)

2019. 5. 2. 字.

[발령 제93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직	
		소 속	직 급
류 미 라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사당제1동	지방행정주사

2019.4.30.字

동작구보

제1598호

동작구



www.dongjak.go.kr

동 작 구